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2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4.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4. .

라. 상정일자 : 2014. 4. 24.(제21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중 단위부담금 내용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단위부담금 2단계(3천㎡미만은 450원, 3천㎡이상은 700원) 구분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1의2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법령의 단위부담금 조정 한도(100분의 100의 범위)로 조정하고, 3단계

(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구분하여, 연도별 단위부담금 신설.(안 별표 1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 내용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조정·반영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이도형, 이재병, 김병철, 정수영 의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 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u>법 3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u> 2.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50원.</u> 	<p>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u>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u></p>